

이 보도자료는 2020. 1. 28. 10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인천지방검찰청**  
전문공보관 윤철민  
전화 032-861-5052, 팩스 032-860-4359

**보도자료**  
**2020. 1. 28.(화)**

**제 목**

**외화반출조직 집중단속 결과**  
**- 6개국으로 1,733억원 반출한 10개 조직 10명 구속 -**

**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**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2019. 10.부터 2020. 1.까지 외화반출사범을 집중단속하여, 불법자금을 ‘여행경비’로 허위신고하거나 면세점 직원을 통해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6개국으로 합계 1,733억원 상당을 반출한 외화반출조직 10개를 적발(총 61명 인지)하여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, 48명을 불구속기소, 3명은 불기소(기소중지 등)하였음
- 수사결과, ①환치기자금, 밀수금과 구입자금, 범죄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‘여행경비’로 허위신고 후 반출한 조직, ②해외가상화폐 구입자금을 ‘여행경비’로 허위신고 후 반출한 조직, ③면세점 직원을 포섭해 외화를 밀반출한 조직, ④반출조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환율우대 등 편의를 제공한 시중은행 부지점장 등을 적발하였음

## 1 수사착수 배경

-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1억원 이상 여행경비신고액수가 2017년 209억원 ⇨ 2018년 2,035억원 ⇨ 2019년 1~6월 970억원으로 급증
- 외국환거래법령상 여행경비의 경우 상한액이 없고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환치기자금, 금괴밀수자금 등 불법자금을 '여행경비'로 허위신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·분석 후 수사에 착수함

## 2 수사 결과

- 2017. 5. ~ 2019. 8.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함께 1,469억원 상당을 반출한 반출조직 등 총 36명 인지, A○○(23세) 등 총책 5명은 구속 기소, 금품을 받고 반출조직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 B○○(56세) 등 적극가담자 8명은 불구속 기소, 단순운반책 20명은 약식 명령 청구, 도주한 공범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음

※ 구체적인 반출용도는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 1,399억원, 환치기 자금 49억원, 범죄수익금 16억원, 밀수금괴 구입자금 5억원 등임

- 2019. 4. ~ 2019. 12.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 L○○(23세) 등 4명을 통해 함께 264억원 상당을 밀반출한 반출조직 총 25명을 인지하여, 총책 I○○(32세), 면세점 직원 알선책 K○○(32세) 등 5명은 구속 기소, 면세점 직원 등 적극가담자 8명은 불구속 기소, 단순운반책 등 12명은 약식명령 청구하였음

※ 반출금은 대부분 해외 카지노에서 속칭 '환치기' 용도로 사용되었음

▶ 구체적인 '피고인별 공소사실'은 별첨 참조

### 3

## 구체적 범행수법

### 1 여행경비 허위신고 반출 범행

- 내국인이 지급수단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여행경비는 상한액 제한이 없고, 증빙서류가 요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반출조직은 불법자금 등을 '여행경비'로 허위신고 후 반출하였음
- 반출조직은 건당 30만원의 수고비와 여행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다수의 운반책들을 고용해 범행에 이용하였고, 반출된 자금은 환치기 자금, 밀수금과 구입자금, 범죄수익금 등 불법자금 또는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인 것이 확인되었음
- 수사과정에서 반출조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환율우대 등 환전편의를 제공하여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운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적발하였음

◀ 범행 체계도 ▶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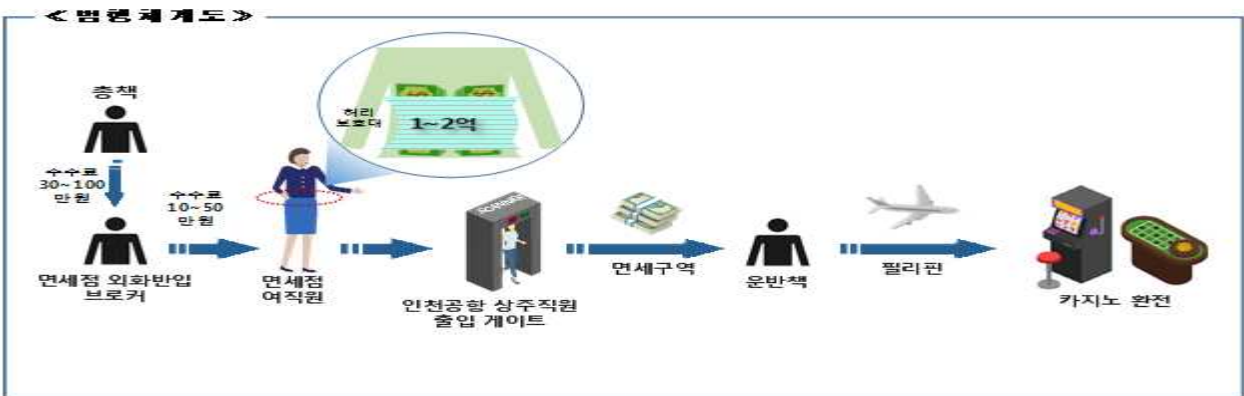
현금 사진1)



1) 피고인들 휴대전화 포렌식분석결과 확인된 현금사진

## ②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 통한 밀반출 범행

- 외화는 금속탐지기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,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넣고, 면세점 직원이 그 복대를 몸에 두르고 인천공항 상주직원 출입게이트를 통과한 후 운반책들에게 외화를 전달하여 밀반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고안함
- ※ 실리콘을 주입하여 특수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넣은 후 면세점 안으로 반입하였기 때문에, 보안검색 과정에서 촉수검사를 하더라도 실리콘의 촉감 때문에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
- 면세점 직원 4명을 포섭하여 면세점 직원으로 하여금 특수 제작한 복대를 착용하고 보안 검색을 회피하는 수법으로, 1회에 1~2억씩 하루 최대 5억원까지 공항면세점까지 운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~50만원을 지급함
- 밀반출된 자금은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도박자금을 환전해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음



실리콘을 주입한 복대 사진



복대를 활용한 외화 반출



## 4

## 수사 결과 분석

### ① 외화반출 조직 다수 적발

- 집중수사를 통해, 6개국으로 1,733억원 상당을 반출한 10개 조직, 61명을 적발하여 그 중 10명을 구속 기소하였음
- 조직원들은 대부분 20~30대로 환치기, 금괴밀반송, 가상화폐 재정거래<sup>2)</sup> 등을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

※ 확인된 환치기, 금괴 밀반송 범행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, 관세법위반으로 인지하여 외화반출 범행과 함께 기소함

### ② 여행경비 신고제도를 악용한 거액의 외화 반출 확인

- 외화반출 조직은 환치기 자금, 밀수금괴 구입자금 등 불법자금과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을 '여행경비'로 허위신고하였음
- 여행경비의 경우 공항 출국시 신고가 가능하고 상한액이 없으며 특별한 증빙서류도 요구되지 않는 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임

※ 일부 조직은 반복적으로 여행경비로 신고하다가 세관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하자, 신고 없이 밀수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음

- 외국환거래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여행경비 신고 후 불법자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는 외화반출 조직을 다수 적발했음을 인천본부세관에 통보하여 향후 재발 방지할 예정임

### ③ 면세점 직원이 외화 밀반출 통로로 이용된 신종 수법 확인

- 인천국제공항 대형면세점에 근무하는 면세점 직원 4명을 건당 10~50만원의 범행대가를 미끼로 범행에 끌어들이었고, 기여도가 큰 일부 직원에게는 무상으로 렌트카를 제공하기도 하였음

2) 국내와 해외의 가상화폐 시세차익(속칭 '김치 프리미엄')을 실현하기 위해, 해외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국내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환매하는 거래를 뜻함

- 면세점 직원은 하루에도 수차례 공항 면세점으로 출입이 가능하고, 상주 직원 게이트는 보안검색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특성이 있어 외화반출 조직에 의해 외화반출 경로로 포섭되었음

※ 하루 수차례 상주직원 게이트를 출입하는 면세점 직원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면세 구역 출입이 자유로웠던 점을 이용

- 보안검색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허점을 이용해 상주직원 출입 게이트와 면세점 직원을 외화 밀반출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 및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할 예정임

#### ④ 시중은행 부지점장의 가담 사실 확인

- 반출조직은 시중은행 부지점장에게 회당 70~100만원을 지급하고 포섭하여 환율우대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**합계 206억원**의 외화를 환전함

※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는 반출조직이 나이(20대 초반)에 비해 거액을 환전한다는 이유로 환전을 거부하였으나, 해당 부지점장은 반복적으로 거액을 환전 해주었을 뿐 아니라 환율을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해주었음

[별첨] 『피고인별 공소사실』

□ 여행경비 허위신고 반출조직

반출 국가	피고인	반출용도	반출금액	비고
일본	A○○ (23세) 등 4명	가상화폐 구입자금	933억원	10. 22. 총책 A○○ 구속 기소, 적극가담자 2명 불구속 기소, 단순가담자 1명 기소유예
	B○○ (56세)	-	-	12. 3. 불구속 기소 [○○은행 부지점장 으로서 반출조직으로부터 함께 1,300만원 수수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
	C○○ (27세)	가상화폐 구입자금	10억원	1. 23. 각 약식명령 청구
	D○○ (25세)		9억원	
	E○○ (38세)		4억원	
	F○○ (27세)		2억원	
중국	G○○ (35세) 등 2명	환치기 자금	1억원	
홍콩	H○○ (35세) 등 13명	환치기 자금	42억원	11. 26. 총책 H○○ 구속 기소, 적극가담자 1명 불구속 기소, 단순운반책 10명 약식명령 청구 도피한 공범 1명 지명수배
	I○○ (34세)	환치기 자금	2억원	1. 6. 약식명령 청구
	J○○ (34세) 등 6명	밀수금과 구입자금	5억원	12. 20. 총책 J○○ 구속 기소, 적극가담자 1명 불구속 기소, 단순운반책 4명 약식명령 청구 ※ 반출한 돈으로 구입한 금괴를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위반 으로 함께 기소
태국	K○○ (34세) 등 4명	가상화폐 구입자금 등	441억원	12. 30. 각 불구속 기소
베트남	L○○ (55세)	범죄수익	16억원	12. 19. 구속 기소 ※ 피고인은 은행대출을 받고 담보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여행 경비로 신고한 후 반출한 것으로, 부동산 매각 부분을 특경법위반(배임)으로 함께 기소
필리핀	M○○ (43세)	환치기 자금	4억원	1. 23. 약식명령 청구

□ 면세점 직원 이용 밀반출 조직

반출 국가	피고인	반출용도	반출금액	처분내역
필리핀	N○○ (32세) 등 11명	환치기 자금	72억원	12. 17. 총책 N○○ 등 2명 구속 기소 적극가담자 1명 불구속 기소 단순가담자 8명 약식명령 청구 ※ 총책 등 5명에 대하여는 필리핀에서 환치기 한 부분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함께 기소
	P○○ (32세) 등 8명	환치기 자금	172억원	12. 26. 총책 P○○, 면세점직원 알선책 Q○○(32세)등 2명 구속 기소 면세점 직원 R○○(23세) 불구속 기소 (구속영장 판사기각) 적극가담자 5명 불구속 기소
홍콩	S○○ (36세) 등 6명	환치기 자금	20억원	12. 27. 총책 S○○ 구속 기소 1. 21. 면세점 직원 알선책 1명 불구속 기소 면세점 직원 3명 약식명령 청구 단순가담자 1명 약식명령 청구 ※ 총책 등 2명에 대하여는 마카오에서 환치기 한 부분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함께 기소